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ESG레벨업 중권모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투자신탁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
명칭 변경	둥)	등)
	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	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	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
	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	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
	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	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
	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	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
	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	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
	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	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
	을 변경하여야 한다.	을 변경하여야 한다.
	1. 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자투	1. 트러스톤 ESG <mark>지배구조</mark> 레벨업
	자신탁[주식]	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	2. 트러스톤 ESG 레벨업 청년형	2. 트러스톤 ESG <u>지배구조</u> 레벨업
	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자신탁	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증권자투
	[주식]	자신탁[주식]
	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부 칙
	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6월
		2일부터 시행한다.